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61

제출일자 : 2026. 8. 21.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과거 포상을 수상한 민간인의 달성군수 포상 수상사실 확인 요청이 최근 증가함에 따라, 포상사실 확인서의 교부 근거와 서식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 사실 확인서 교부 근거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나. 별지 서식에 포상사실확인서를 신설(안 별지 제6호서식)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6. 7. 20. ~ 8. 10.)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포상 사실 확인)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포상 증서 또는 패(牌)를 분실하여 포상 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사실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포상사실확인서

□ 피포상자 현황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포상 내용

○ 포상종류 :

○ 훈　　격 :

○ 공적사항 :

○ 포상번호 :

○ 포상일자 :　　년　　월　　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달성군수 포상을 받았음을 확인함.

포상대장 등재 확인자

달성군 (부서명) 직급　　성명　　(인)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포상 사실 확인)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포상 증서 또는 패(牌)를 분실하여 포상 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사실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 설〉	[별지 제6호서식] 포상사실확인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